

## 용인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 조례

제정	1995. 6. 1	조례 제 1415호
개정	1996. 3. 1	조례 제 8호(조례·규칙등 공포에 관한 조례)
	1998. 7. 3	조례 제 127호(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)
	1998. 10. 8	조례 제 138호(행정기구 설치 조례)
	1999. 4. 3	조례 제 178호
	2003. 6. 13	조례 제 442호
	2005. 10. 5	조례 제 620호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」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1999. 4. 3, 2005. 10. 5>

제2조(구성) ① 용인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
<개정 2005. 10. 5>

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 실·국장이 된다.

<개정 2005. 10. 5>

③ 위원은 용인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 그리고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용인시장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

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.

제3조(실무위원회) 위원장은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심의·조정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무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.

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
2. 민간투자시설사업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
3. 사업시행자 지정 및 사업계획 심의
4. 법령에서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

5. 기타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부의하는 사항

제5조(위원장의 직무)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소집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,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.

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,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 <개정 2005. 10. 5>

③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6조(회의) ① 위원회의 회의는 시장이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, 가부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7조(간사 등) 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.

②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 담당관·과장이 되고 서기는 민간투자사업 업무를 수행하는 담당이 된다. <개정 2005. 10. 5>

제8조(의견청취 등)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, 단체 등에 자료 및 의견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제9조(회의록) 위원장은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, 그 결과를 시장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0조(실비변상)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「용인시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」가 정하는 바에 따라 일비와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 <개정 1998. 7. 3, 2005. 10. 5>

제11조(운영세칙)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1996. 3. 1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8. 7. 3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8. 10. 8>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 생략

부칙 <1999. 4. 3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3. 6. 13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 <2005. 10. 5 조례 제620호>

이 조례는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.